

---

## COVID-19사태에 대한 불가항력조항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주령커

중국강소과학기술대학 국제무역학과 강사

박광서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오은지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Clause to COVID-19: Focus on Case Studies in China

Ling-Ke Zhou<sup>a</sup>, Kwang-So Park<sup>b</sup>, Eunji Oh<sup>c</sup>

<sup>a</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sup>b</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3 May 2020, Revised 24 June 2020, Accepted 28 June 2020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if the current COVID-19 event can be admitted as an excuse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selected case study method in the analysis. Firstly,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addressed in CISG, UCC, Chinese Law, and Korean Law were organized. Secondly, this study reviewed the avian influenza event in 2006 and the natural disaster event occurred in Guangdong, China, in 2017.

In the study, three critical evaluation factors are suggest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following: 1) possibility of foresight of the event, 2) possibility to overcome and avoid the event, and 3) the enterprise's countermeasures of the event. As an implication, this study organized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that were indicated in various kinds of Laws and suggested the basic framework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dmittance as a Force Majeure event.

---

**Keywords:** COVID-19, Force Majeure, Hardship, Non-Performance

**JEL Classifications:** F19, K12, K33

---

<sup>a</sup> First Author, E-mail: zlk881218@sina.com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park40@konkuk.ac.kr

<sup>c</sup> Co-Author, E-mail: oej2221@konkuk.ac.kr

## I. 서론

2019년 12월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에 병인을 모르는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의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접촉한 바 있는 화남해산물시장에서 이전에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분리하여 병인으로 지목했다.<sup>1)</sup> 2020년 1월 23일부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우한시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지만 2020년 춘운(春運)<sup>2)</sup>이 이미 시작된 이후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중국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이하 “COVID-19사태”라고 함).<sup>3)</sup>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이웃 나라이며,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되었다. COVID-19사태는 각 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관광업, 외식산업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물론, 공장의 작업 중단으로 제조업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발표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국위원회(ICC China)가 기업들에게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거래에 있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개입에 따라 불가항력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으나, 국제무역거래에서 다른 나라의 당사자의 경우 ICC China의 증명서를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sup>4)</sup> 사실상 ICC China의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없다.<sup>5)</sup>

본 논문에서는 COVID-19사태로 인해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 사태로 작업이 중단된 공장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불이행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관련 사례조사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문헌연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중국법, 한국법, 미국통일상법전(UCC) 등 여러 규칙과 중국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에도 큰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불가항력의 의의와 구성요건

로마법에서 유래된 불가항력의 개념은 나라와 그 적용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윤용석, 2016). 하지만 거의 모든 법상 불가항력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된다.

- 1) 언론들은 화남해산물시장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을 보도했는데, 최근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해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점은 본 연구의 내용과 관계가 없어, 정확한 결과를 따지지 않았다.
- 2) 춘운(春運)은 설날 연휴 때 중국인들이 전국 각 지방에서 본인의 고향에 돌아가는 대규모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 3)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2020.2.12.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공식명칭을 코로나(Corona)+바이러스(Virus)+질환(Disease)+발병시기(2019)의 의미로 COVID-19로 명명하였다. 2003.4월 중국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COVID-19는 2020.6월 현재 종식되지 않고 진행중으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4) ICC의 행사를 참여할 때 ICC China가 민간기구이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의 명의로 일부의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그가 발급한 서류는 중국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정부 공문으로 보기도 한다.
- 5) 중국 국제상보(ICC China가 주관되는 신문) 2020년 2월 12일의 보도에 따르면 ICC China 상법과 거래관행위원회 위원인 李時民은 “COVID-19사태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불가항력으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전제 면하는 것을 기대해서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다.

**Table 1. Elements of Force Majeure in Laws**

Laws	Elements of Force Majeure
CISG	1. an impediment beyond the party's control 2. the party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UCC	1. occurrence of a contingency 2. seller must allocate production and deliveries among his customers
Chinese Law	1. the hardship cannot be expected in advance 2. the hardship cannot be avoided 3. the hardship cannot be solved afterwards
Korean Law	1. unpredictable natural disasters (commercial law of Korea Republic § 796) 2. Unsolvable man-made accidents (commercial law of Korea Republic § 877)

Sources: organized by authors

CISG 제7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로 인하여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고, 계약 불이행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당사자의 능력으로 사전 예견할 수 없는 장애이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능력으로 사후에도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이어야 한다.<sup>6)</sup>

UCC 제2.615조에 의하면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이미 생산된 물품을 여러 매수인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는다.<sup>7)</sup> 그리고, 만약 예견할 수 없었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책 방안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대책 방안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sup>8)</sup>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UCC의 제2.615조의 제목은 “Excuse by Failure of Presupposed Conditions (예정된 거래조건의 실패로 인한 면책)”이며, 그 내용상 매도인의 면책만 규정되고 있다.

중국 합동법 제117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당사자는 전체 혹은 부분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전에 예견할

수 없고, 장애가 발생 시 회피할 수 없고, 사후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된다.<sup>9)</sup> 이는 CISG 제79조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1999년에 중국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간 법규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합동법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합동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제규칙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Zhou, Ling-Ke, 2019).

한국 상법의 제796조에 따르면 예견하기 어렵거나 예견하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벼락, 번개, 홍수 등 자연현상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된다.<sup>10)</sup>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규와 비교할 때 한국 상법상 “피할 수 없는 사고 (inevitable accident)”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합리적 주의를 행사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사고를 의미하며, 당사자에게 단순 불가항력보다 더 넓은 면책 범위를 부여한다.<sup>11)</sup>

당사자가 어떤 장애로 인하여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이 불가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법규상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① 해당 장애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 ② 해당 장애가 사후에도 극복할

6) CISG § 79.  
7) UCC § 2.615.  
8) UCC § 2.614.

9) 중국 합동법 제117조.  
10) 한국 상법 제796조(act of god)  
11) 한국 상법 제877조(inevitable accident)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예견하는 것과 극복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장애로 인하여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 장애를 예견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었던 장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장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같은 장애인데도 입장에 따라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COVID-19사태의 경우도 사전 예견 가능성과 사후 극복 가능성에 대하여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각 법규에서는 어떤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규정들 자체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실무자들은 계약조항에 구체적인 불가항력조항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불가항력의 인정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째, 거래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해당 논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서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거래를 포기하기보다는 거래조건을 수정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헌들은 'pacta sunt servanda(약정은 준수되어야 한다)'의 관점에서 장애의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서지민, 2014; 최상렬, 2011; 정상현, 2011). 이러한 문헌들에서는 어떠한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할 때 각 법규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어떠한 장애가 불가항력이 인정받기 위해서 "외부성"과 "불가피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계약 이행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한다(이은희, 2018). 그리고 국제결제에 있어서, 신용장(L/C)과 추심(D/A or D/P) 거래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장애로 인하여 매매계약뿐 아니라 신용장과 추심거래 시의 거래은행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의 면책에 관해서는 특정한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UCP나 URC 등 국제상업회의소의 거래관행에 따르게 된다(박세운, 2011).

셋째,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GISG상의 불가항력을 연구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오현석, 2016; 강석연, 2012), 사례를 가지고 여러 법규의 불가항력 인정 요건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고(Jin, Ke-Ke, 2011), 특정 유형의 사업의 불가항력 사례연구도 있다(정홍식, 2019; 이훈, 2016).

요컨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가 주관적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각 법규상의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해당 법규뿐 아니라 그 법규의 입법적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천수, 2013). 그러나 법규의 입법적 원칙도 일종의 법규이며, 그 원칙에 대한 해석도 시각 혹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불가항력의 인정기준을 도출하는 데 사례연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 Ⅲ. 불가항력에 대한 사례분석

어떠한 거래에서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저해하는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었는지의 여부는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를 연구

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번 COVID-19사태와 유사한 이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COVID-19로 인한 거래 불이행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 1. 조류인플루엔자(2006년) 사례

### 1) 사례개요<sup>12)</sup>

U사는 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 식품원료공급기업이다. N사는 루마니아의 한 식품가공기업이다. 2006년 초에 U사와 N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동 닭고기를 거래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에 따르면 U사는 5월 말까지 N사에 지정된 수량의 냉동 닭고기를 납품해야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졌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 정부는 해당년도 6월 초까지 조류제품의 직접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명령을 내렸다. 즉, U사는 직접수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N사는 자사의 공장의 작업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U사에 루마니아 밖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여 우회 무역을 통해 거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U사는 장애가 이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U사는 선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당 냉동 닭고기를 다른 제3자에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U사는 해당 냉동 닭고기를 제3자에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았으나, N사는 상품을 인도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N사는 계약 중재조항에 따라 미국중재협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중재인들은 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첫째, U사가 주장한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사건으로 인한 정부 직접수입 금지명령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는지 몰라도 직접수입만을 금지하는 명령은 우회 무역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U사의 계약위반은 N사가 계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했음으로써 본

질적인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했다.<sup>13)</sup>

## 2) 사례평가와 시사점

미국중재협회의 중재에 따르면 U사에서 명백하게 실수가 있었고, 이는 계약위반으로 이어졌다.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장애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 발생하는 과정에서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입금지 명령의 경우 예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루마니아 정부는 다른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조류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명령을 회피하거나 극복할 방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중재협회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장애를 회피할 수 있다면 대체방안을 채택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상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계약불이행의 사유로는 인정 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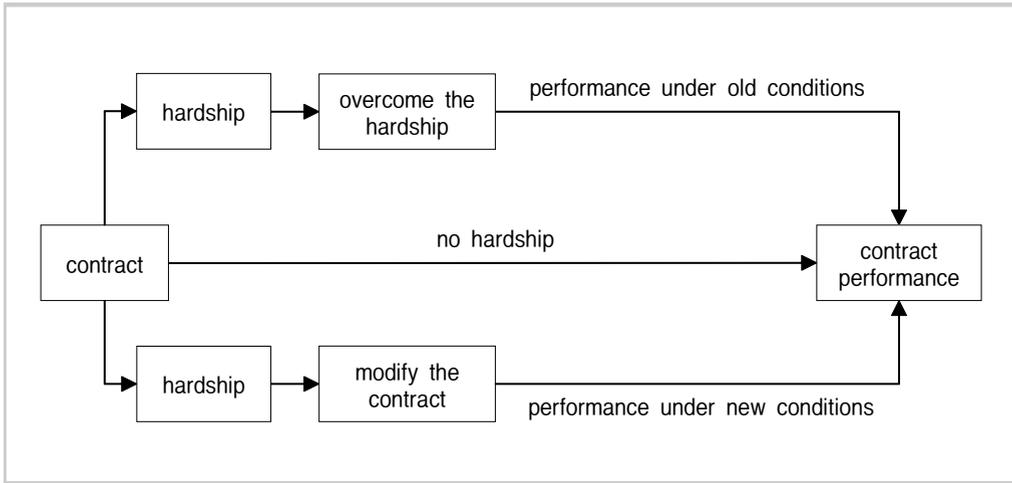
둘째, 해당 사례에서 U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거래를 원활하게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계약불이행을 초래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는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이후 매도인인 U사는 상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계약이행과 똑같은 이익을 얻은 반면 N사는 상품을 인도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즉, 계약불이행을 초래한 장애는 한 당사자에게는 해를 미친 반면 다른 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례는 미국중재협회가 CISG를 준거법으로 판결을 내린 판정으로서 계약불이행을 초래하는 장애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12) 강석연(2012) 전계논문 사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인용.

13) CISG §25를 근거한 판결이다.

Fig. 1. Understanding for "overcome the hardship"



Sources: organized by authors

첫째, 계약이행의 대체방안이 없어야 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pacta sunt servanda* 관점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후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여야 한다.”는 점은 그 장애가 원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계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체방안도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래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계약 수정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사법적 사례를 처리하는데 있어 신의성실 원칙의 준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Yang Xiang-Yun, 2020; Bao Bing-Feng, 2018). 불가항력의 인정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이행을 저해하는 장애는 모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선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 U사는 장애 가운데 본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대체방안을 실행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무시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대체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와 해당 물품

을 거래했다는 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거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만약 계약이 원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최대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 당사자의 경우 이후의 중재나 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Liu Xin-Hui, 2017).

## 2. 자연재해(2017년) 사례

### 1) 사례개요<sup>14)</sup>

2017년 중국 광둥성 둥관시(广东省东莞市) 건축소재수출회사인 P사는 마카오의 M사에게 시멘트관을 수출하기로 했다. 해당년도 8월 22일 오전 11시, P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자가운송으로 출항했다. 약 17시 경, 선장은 태풍 하도

14) Xu Yan-Song (2018)가 제시한 사례이다.

(HATO)를 피하기 위하여 광둥성 주하이시(广东省珠海市)에 임시 정박을 결정했다. 8월 23일 12시가 넘어 태풍이 강해져 주요(走錨, Dragging Anchor)<sup>15)</sup>가 발생했다.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퇴선 명령을 내렸고 모든 물품이 침몰하였다. P사는 물품의 침몰로 인한 인도불능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했는데, M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P의 계약위반임을 주장했다.

M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동관시중급인민법원(東莞市中級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태풍 하토가 예견 가능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주장했다. P사의 주장에 따르면, 기상예보를 통해 태풍 하토가 올 것은 예상할 수 있었으나, 예보에 따르면 정선 구역은 태풍 하토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야 했으나, 태풍 하토의 이동 경로가 변경되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는 P사가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장애라고 주장했다. 반면, M사의 주장은 달랐다. M사에 따르면 태풍 하토의 이동경로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견할 수 없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태풍 하토에 관한 마지막 예보에서 태풍 이동 경로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규칙에 따라 P사의 선박은 안전감시원을 포함하여 최소 4명의 선원이 필요한데, 사고 발생 시 선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선원만 승선한 상태였다. 물론 선박의 조종은 안전감시원이 없어도 가능한 하지만 안전규칙상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

법원은 사실을 조사한 후 “사고 발생 다섯 시간 전에 태풍의 이동 경로 변경을 알 수 있었다”며, “P사는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와 선박을 조작하는 데 안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P사의 불가항력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P사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 2) 사례평가와 시사점

동관시중급인민법원(東莞市中級人民法院)은 M사의 주장을 지지했는데, 이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가항력 인정 여부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Zhuang, Shu-Qiao, 2017), 장애의 예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상기 사례에서는 태풍의 발생과 발생 후의 이동 경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초기 예측한 이동 경로의 풍력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는 당사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지만, 사고 발생하기 전에 기상관측기관에서 이미 정보를 갱신하고 태풍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P사는 정보수집에 좀 더 노력했다면 원래 계획대로 운송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P사는 최신 정보를 획득하지 않았고 이것은 P사의 실수로 간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를 예견하지 못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예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노력함으로써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애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기 사례에서 P사가 태풍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는데, 사실상 P사가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P사가 태풍의 이동 경로 변경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라 일종의 실수로 봐야 한다.

둘째,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당사자는 그 어떤 잘못이 없어야 한다. 불가항력의 정의는 계약의 불이행을 초래하는 당사자의 통제능력을 벗어난 장애로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 때문에 계약불이행 가운데 당사자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과 계약불이행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불가항력 인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동 사례에서는 P사의 선박의 안전감시원이 한 명 부족했는데, 빠진 한 명의 안전감시원이 태풍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태풍을 피하는

15) 주요(走錨)는 닻을 내려 정박한 선박의 닻의 파지력이 외력보다 작게 되어 닻이 끌려 배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일을 의미한다.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감시원이 있다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 여부는 모두 의문이다. 태풍에 대해서는 P사가 예견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더라도 선박 운항 중의 인원 배치문제는 완전히 P사의 잘못에 해당한다. 결국 P사가 이번 사고 발생에 실수가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의 인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6)</sup>

요약컨대, 태풍 등 자연재해는 대체적으로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태풍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합당한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 3. COVID-19(2019년) 사례

COVID-19사태가 발생한 이후, 80% 이상의 기업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위반 책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약조건에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시킨 기업은 50%미만이다.<sup>17)</sup> COVID-19사태는 아직 진행 중인 문제이며 그 중의 계약분쟁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sup>18)</sup>가 있다.

#### 1)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

쑤저우시의 의류기업인 Z사는 OEM과 ODM 방식으로 스포츠의류를 생산하여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Z사는 특허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의 OEM주

문과 아마존 등의 유통업체에서 많은 주문을 받는다. 중국의 인건비상승으로 Z사는 2012년부터 일부 생산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COVID-19사태 초기에 Z사의 경영진은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여 생산중단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생산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문을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설 이후 중국 내 전국적인 생산중단은 Z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COVID-19의 확산으로 많은 상점이 정업 혹은 폐업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의 매수인이 주문량을 줄이거나 취소하였기 때문에 Z사는 손해를 입었다. COVID-19초기에 중국기업에서 많은 계약 불이행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외 국가에서도 COVID-19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문제를 대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상기 사례와 같은 분쟁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국, 미국,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가 CISG의 체결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 계약에서는 CISG와 어느 나라의 국내법을 함께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UCC상 매수인의 불가항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중국법 혹은 다른 나라 법에 의해 사례를 처리할 수 있으나, 아직 이와 같은 사례에는 명확한 해결법이 없다.

#### 2) 물류중단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쑤저우시의 F사는 일회용 의료용품을 생산하여 중국 동부지역에 있는 의료센터와 약국에 공급한다. COVID-19사태 전에 의료용 마스크는 F사의 주요 제품은 아니지만 소량 생산이 가능했다. COVID-19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F사도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렸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COVID-19사태 가운데 마스크의 주문이 폭증하고, F사는 계약대로 생산을 완료하였으나 선적에 문제가 발생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일부 나라가 본국의 향

16) Xu Yan-Song (2018)에 따르면 사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원고(M사)는 선박 운항 중의 안전감시원 결실이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고의 예방에 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17) 설문조사개요: ① 제목: COVID-19사태가 중소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② 조사기간: 2020.4.1. ~4.10(10일간), ③ 조사대상: 쑤저우시 수출기업 413개사, ④ 회수업체: 402개 (회수율 97.3%), ⑤ 조사기관: 중국 쑤저우(蘇州)시 상업회의소

18) 이 절에서 제시한 사례는 장가항시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저자가 현장 조사한 사례이다.

구와 공항을 부득이 봉쇄함으로써 정기선 운항을 정지했다. 따라서 F사는 주문량을 모두 생산했으나 물류의 중단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했다.

상기와 비슷한 사례가 이번 COVID-19가 확산된 이후 많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에서 불가항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물류중단의 장애가 극복 가능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중단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과 유럽 방향의 운송통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된 이후, 미국시장의 의뢰를 축소시키기 위해 “일대일로”공정을 실시했다. “일대일로”공정의 일부로서 중국-유럽 정기열차(中欧班列)를 운항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전통물류 통로의 중단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운송비 상승, 거래 경로변경 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IV. COVID-19사태의 불가항력 사유인정

##### 1. 불가항력 구성요건 해당 여부

###### 1) COVID-19사태의 예견 가능성

계약의 불이행을 초래하는 장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된다면 예견이 불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COVID-19사태는 일종의 역병사태이기 때문에 예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는 첫 환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12월 30일에 리원량(李文亮) 의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에게 SARS<sup>19)</sup>와 비슷한 폐렴 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1월 3일에 우한시의 공안기관이 의사 리원량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했다.<sup>20)</sup> 이에 따

라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1월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1월 하순부터 우한시의 전면봉쇄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태의 엄중성을 알게 됐다.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의학자들은 이미 사태의 미래 변화추세를 예측했다(Jin, Qi-Xuan, 2020; Wang, Zhi-Xin, Zhi Liu and Zhao-Jun Liu, 2020). 그러므로 의학자들이 과학적인 모델을 통해 사태의 영향을 예측한 상태에서 기업이 앞으로 작업 중단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예견할 수 없었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COVID-19사태가 발생하기 전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 불가능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 우한시와 같은 교통중심 도시를 봉쇄하고, 전국 공장의 작업을 중단시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COVID-19사태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초기에 이후 공장 작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sup>21)</sup>

둘째, COVID-19사태가 발생한 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가 전혀 예견 불가능했을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해 수상 교통사고 사례에서 논의했듯이 당사자가 장애를 예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더 이상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020년 1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임을 선포했다. WHO의 역사상에 PHEIC는 이번 COVID-19사태를 포함하여 총 6번이 있었고<sup>22)</sup>, 매년 PHEIC

20) 2020년 3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리원량 의사에 대한 처벌은 부적절하다는 공식적 의사를 표했다.

21) 강석연 전계논문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해 겨울에 예상치 못한 한역(寒疫)이 발생함으로써 매도인의 선적이 지연됐다. 소송에서 판사는 해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추운 날씨가 있으나, 당해 기온이 몇 십 년간 가장 낮아 예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COVID-19사태는 중국의 첫 역병 사태가 아니지만 한 도시가 봉쇄된 것은 사태 자체가 예견되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19) 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여 홍콩 등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를 선포한 후 해당 나라의 국제간 인원이동이나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COVID-19 사태가 발생한 후, 특히 WHO가 PHEIC를 선포한 후 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신의 계약 불이행이 예견할 수 없었던 장애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sup>23)</sup>

요컨대, COVID-19로 인한 공장 작업 중단이 사전에 예견 가능했을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COVID-19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사건이 발생하고 특히 WHO가 PHEIC를 선포한 이후에는 당사자가 지난 다섯 번 PHEIC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COVID-19를 더 이상 예견할 수 없는 장애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2) COVID-19사태의 회피와 극복 가능성

COVID-19사태의 영향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기업이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COVID-19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그 영향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과 발생한 이후에도 그 장애의 영향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COVID-19사태는 중국뿐 아니라 각 나라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은 정부조치부터 비롯되었다. 정부는 감염자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업의 생산활동을 중단시켰다. 기업은 정부의 관리하에서 활동하는 주체이고, 정부의 명령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COVID-19는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장애임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장애를 기업이 극복할 수 없는가의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 로컬 중소기업(local SME)인 경우,

COVID-19사태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다. 특히 경공업 로컬 중소기업인 경우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고, COVID-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종업원의 확보<sup>24)</sup>, 공장 설비의 작동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 2020년 3월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COVID-19사태 이후 중국 경공업 기업의 영업실적이 작년대비 20%-30%의 감소를 기록해 로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증명했다.

둘째, 다국적기업(MNE)인 경우, COVID-19 사태에서 계약이행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로컬 중소기업보다 비교적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장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정부는 중국 정부만이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공장은 작업을 중단 했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을 통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냉동 닭고기 수입 사례에서의 시사점과 같이 어떠한 장애로 인해 원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체방안을 통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당 장애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경우 여러 영업소가 있다면 중국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을 활용하여 원계약을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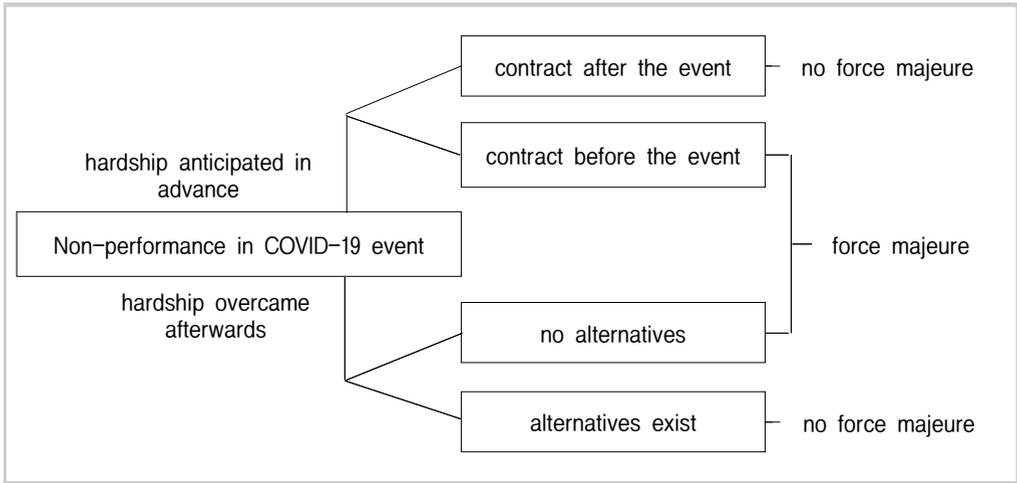
요컨대, COVID-19사태가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회피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COVID-19가 초래한 계약이행 장애가 극복이 가능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로컬 중소기업들은 장애를 직면할 때 계약이행의 대체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여러 나라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한 공장의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다

22) WHO는 지금까지 총 6번 PHEIC를 선포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야생형 폴리오, 2014년 에볼라(서아프리카), 2015년 아메리카 지카바이러스, 2019년 키부 에볼라, 그리고 이번 COVID-19 등이다.

23) 2020년 2월 5일 난징일보(南京日報) 기사에서 WHO가 PHEIC를 선포한 이후, 중국의 기업들이 작업 중단을 이미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도했다.

24) 중국의 경공업 로컬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경제발전이 잘 안 되는 중부, 서부 지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공업 로컬 중소기업이 대부분 양쯔강 델타지역(상하이, 저장성, 지강쑤성)과 주강 델타지역(광둥성)에 소재하는데, COVID-19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교통중단으로 인해 종업원들이 기업소재지를 향해 이동할 수 없게 됐다.

Fig. 2. Force Majeure in COVID-19 Event



Sources: organized by authors

른 공장을 통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 장애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 2. COVID-19사태에 따른 대응방안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OVID-19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이 미리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COVID-19로 발생한 계약이행 장애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COVID-19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장애가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것”, “그 과정에 회피 불가능한 것”, “사후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해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COVID-19사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 입장에서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COVID-19사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약이행의 대체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번 COVID-19사태로 전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경영실적에도 도움이 된다. 다

른 하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체방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 경우 계약이행의 장애는 재판이나 중재에서 불가항력의 장애임을 증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둘째, 기업은 해당 장애 관련하여 제3자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큰 쟁점은 당사자 간의 장애가 계약이행에 주는 영향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불가항력이 인정된다면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분명히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제3자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COVID-19사태 중 기업은 자신의 계약이행의 장애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의 공장 작업중단 명령이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기업의 상황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요컨대, COVID-19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 영향을 받은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모든 경우가 무조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기업은 자신의 계약 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도록 원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객관적인 제3자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COVID-19사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나라의 보건, 경제 등에 큰 타격을 줬다.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가장 큰 영향은 기업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번 COVID-19 사태 중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연구했다.

불가항력의 인정은 각 법규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대략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계약불이행을 초래한 장애는 사전 예견 불가능한 장애여야 한다. 둘째, 그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회피할 수 없고, 그 장애가 계약이행에 주는 영향도 극복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이론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COVID-19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인 경우, 그 불이행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겠으나, COVID-19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히 WHO가 PHEIC를 선포한 이후의 경우 계약이행의 장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둘째, COVID-19사태의 영향은 정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로컬 중소기업인 경우에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경우 세계 각지에 여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

에서 대체 생산하여 COVID-19사태의 계약이행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즉, 로컬 중소기업은 COVID-19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겠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COVID-19사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장애로 인해 원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대체방안을 찾아 원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번 COVID-19사태에서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치이며, 불가항력의 인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기업은 장애가 계약이행에 주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증거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불이행에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지는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의 인정 문제는 사법(civil law)상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연구주제이다. 현실에서는 각 나라의 법이 서로 달라 하나의 장애가 불가항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답이 없다. 이번 COVID-19사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큰 재앙이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거래질서와 비즈니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서의 모든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o, Bing-Feng (2018), "The Theoretical Changes and Legislative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Litigation",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21, 19-40.

- Choi, Chang-Ryeol (2011), "A Study on Assurance Scheme of Contract Observance", *The Journal of Property Law*, 27(3), 157-194.
- Chung, Hong-Sik (2019), "Risk Allocation of Force Majeure in PPP Projects Overseas",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8(2), 1-26.
- Jin, Ke-Ke (2011), "Default and Termination: Comparison between Contract Law of China and CISG", *Law Studies*, 31(1), 65-93.
- Jin Qi-Xuan (2020),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Prediction Modeling and Rational Evaluation in China", *Statistics & Decision*, 2, 1-8.
- Jung, Sang-Hyun (2011), "L'étude Sur Le Point de Départ Historique de La Maxim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SungKyunKwan Law Review*, 23(3), 187-235.
- Kang, Seok-Yeon (201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s* (Master's Thesis), Seoul,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Cheon-Soo (2013), "A Study on the Exemption Provision in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5), 2191-2208.
- Lee, Eun-Hee (2018),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s an Excuse in French Civil Law", *SNU Law*, 59(3), 45-79.
- Lee, Hoon (2016), "Study on Force Majeur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with focus on FIDIC Terms and Conditions",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5(2), 1-27.
- Liu, Xin-Hui, *The Study of Judicial Intuition* (Doctoral Dissertation), Shanghai, China: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Oh, Hyon-Sok (2015), "A Study on the Impediment in CISG and Related Cas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30(2), 23-44.
- Park, Sae-Won (2011), "Force Majeure Clause in the ICC Uniform Rul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2(2), 97-113.
- Sur, Ji-Min (2014), "A Legal Issue Related to Force Majeure Clause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Business Law Review*, 28(2), 469-503.
- Wang, Zhi-Xin, Zhi Liu and Zhao-Jun Liu (2020), "2019-nCov Analysis and Forecast Based on Machine Learning", *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1, 1-9.
- Xu, Yan-Song (2019), "Determination of Force Majeure in Water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yphoon", *World Shipping*, 8, 1-4.
- Yang, Xiang-Yun, "The Connot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Improvement Strategy, and Its Influence on Enterprises in Civil and Commercial Law", *China Journal of Commerce*, 3, 243-244.
- Yoon, Yong-Seok (2016), "Eine Betrachtung in Bezug auf höhere Gewalt", *The Journal of Property law*, 33(1), 139-162.
- Zhou, Ling-Ke (2019), *Contract Law for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A Study on CISG Based on Commercial Views Approach*, Beijing, China: China Fortune Press.
- Zhuang, Shu-Qiao (2017), *The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the Frustrated Contract System between China and United Kingdom* (Master's Thesis), Xi'an, China: Shaanxi Normal University.